

2021년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14.(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3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93건(안전번호 제2021-63292호~6388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63292호는 명백하게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63293호~63323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6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3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5쪽의 저작물명, 저작물 정보, 6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업종명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제2호 안건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정보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제2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69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63292호~6388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6329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만화 ‘☆☆☆☆☆☆’ 번역본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자는 해당 만화를 직접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 저작물은 ★★★★★★★★★★★★★★의 만화 시리즈 중 하나로, ○○○○○○○○○에 발행되었음. 이후 ★★★★★★★★★★★★★★에 의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되었고, ●●●●●●●●●●부터 공식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하여 제공 중에 있음. 한 호당 2,500원에 판매 중임.

★★★★★★★★★★★★★★★★의 만화 시리즈에 대한 국내 판권은 ‘○○○○○○’가 독점하고 있으며, 해당 시리즈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매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국내 이용자로서는 위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제공되는 영어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음.

★★★★★★★★★★★★★★★★는 공식 웹사이트의 ‘디지털 코믹스 라이선스

계약 및 이용약관을 통하여 '디지털화된 만화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복제, 재배포, 수정, 번역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6329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신고인이 권리자인지? 발행된 지 오래된 만화에 대한 신고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특별히 권리관계 등을 밝힌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인 일반인으로 판단됨.
- B 위원: 블로그 성격이 상업적인지? 광고 등 게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블로그를 제시하면서)광고는 없으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블로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권리자가 디지털 콘텐츠의 번역 자체를 금하고 있음. 권리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저작물은 디지털 콘텐츠로, 실물책의 발행시점이 오래전인 것과는 별개로 비교적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로 리마스터링된 저작물임.
- A 위원: 개인의 블로그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블로그를 제시하면서)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블로그로 확인됨. ★★★★★★★★★★★★의 만화 시리즈 일부를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정식 한국어판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시자가 직역본이 아닌 의역본을 작성한 것으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관리자가 번역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D 위원: 번역 부분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만화의 그림 부분 자체에 대한 복제·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함.
- E 위원: 취미생활을 향유하는 비상업적 목적의 팬 블로그라는 점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저작권 침해 사안임이 분명하며 형식적으로는 부결할 사유가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관리자가 '◇◇◇◇'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존의 유사한 사안에서는 이용약관에 '사적 이용'은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전혀 없음. 오히려 번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가결 사안이라고 판단됨.

- A 위원: 기존 심의 사례 중 팬들이 팬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편을 더빙한 건이 있음. 당시 더빙 수준이 매우 낮아 합법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이번 심의안건은 합법 시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만화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번역본 부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음. 번역기를 이용하거나 이 정도 수준의 영어는 각자 해석해서 이용하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한 호 전체를 번역하여 그림과 함께 전송하는 형태가 팬 집단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보편적인 이용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임.
- E 위원: 법상 저작물을 연구 또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사안과 같이 블로그를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동의함. 한 호 전체 분량을 올리고 있고, 번역의 정확성을 떠나 그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점, 관리자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서 사적 번역을 금지하고 있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는 확실해 보이거나 정식 한국어판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즐길 활로조차 막아야 하는지 안타까움. 하지만 이미 논의했던 대로 권리자의 의사가 명백하므로 가결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대체 가능한 합법 시장이 없어 보이는 점, 팬으로서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번역인 점, 상업적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결하자는 입장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3292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3293호~63297호는 2명의 민원인이 각각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 만화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3298호~63323호는 2명의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3324호~6388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Dynamit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63341호는 5월 26일자 인기곡 102곡을 24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63591호는 2021. 6. 3. 개봉하여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판매 중임. 자막 포함하여 재생 중인 것까지 확인함.

(방송 '왕좌의 게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63811호는 2011. 4. 17. ~ 2011. 6. 19.까지 미국 HBO에서 방영한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즌 1 1-10화를 판매 중인 사안임.

이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63293호~6388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63293호~63881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3292호~6388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2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